

# 瑞山市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9. 7. 16

나.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9. 7. 19

라. 上程日字 : 1999. 7. 27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社會女性福祉課長 崔鎮珏)

가. 提案理由

- 現行 「서산시묘지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중 그동안 묘지사용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묘지를 사용할 때 제출토록한 서류제출 규정 삭제
- 묘지의 등급결정, 경계의 설비, 지형변경등의 허가규정 삭제
- 묘지사용권의 전대 및 양도금지 규정 삭제
- 묘지의 불법사용 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50,000원이하) 규정 삭제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동 조례안은 그동안 불필요하게 묘지사용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사항에 대하여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규제의 원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정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 입법예고 절차등을 거쳐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의거 동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그동안 묘지의 불법 사용자에게 대하여 적용하여 왔던 과태료 50,000원 이하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 앞으로 묘지의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의 : 묘지를 불법 사용자에게 대하여 적용하여 왔던 과태료 50,000원 이하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인식 잘못으로 묘지를 무질서하게 사용할 소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있는치?
- 답변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도 처벌규정이 있고 사용신고를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 공동묘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76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7. 16.

#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
----------	----

제출년월일 : 1999. 7. 16

제 출 자 : 서산시장

## □ 개정이유

-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 나타난 미비점 및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침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공설묘지는 공유재산이고,관습상 매장되었던 장소에 재매장하지 않는 관계로 제한규정이 없어도 운영상 문제가 없기에 묘지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폐지함.
- 나. 묘지의 등급결정,경계의 설비,지형변경등의 규정을 폐지함.
- 다. 묘지의 불법사용한자에 대하여는 50,000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폐지함.

##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 나. 입법예고

- 예고기간 : '99. 3. 25 ~ 4. 15 (서산시공고 제99-79호)
- 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 다.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98. 11. 17.
- 심의결과 : 완화 (기감 05090-158('99. 2. 2))

##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묘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용신청)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 1”을 “별표 의”로 “허가”를 “사용신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제한”을 “사용면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사용구분”을 “사용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을 “그 사용한 장소”로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삭제 한다.

제10조의 제목 “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를 “사용권 이전신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자”를 “묘지사용자”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자”를 “묘지사용자”로, “허가”를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용 조 건

1. 묘지사용자가 상속에 의하여 묘지 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묘지사용신고자는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신고 하여야 합니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지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묘지사용조례 및 묘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나. 공익상 필요한 때

[별표]

## 묘지 사용 요율표

요율구분	기준	요액
기본면적(6.6평방미터)까지		500원
초과면적	3.3평방미터당	500원

##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사용절차) ①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묘지의 위치</p> <p>2. 사용면적</p> <p>3. 사용방법</p>	<p>제2조(사용신청)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별표 1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사용료) ①.....별표의.....사용신청.....</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등급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등급은 시장이 정한다.</p>	<p>(삭제)</p>
<p>제5조(사용제한) 묘지의 사용면적은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사용면적) .....</p> <p>.....</p> <p>.....</p>
<p>제6조(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p>	<p>제6조(사용방법) .....그 사용한 장소.....</p> <p>.....</p>
<p>제7조(경계의 설비)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는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8조(지형변경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시이외의 공작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9조(사용권의 전대 및 양도금지) <u>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됨은 예외로 한다.</u></p>	<p>(삭제)</p>
<p>제10조(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 <u>묘지사용자가 상속에 의하여 묘지 사용권을 이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u></p>	<p>제10조(사용권 이전신고)..... ..... .....</p>
<p>제11조(사용 폐지신고) ①<u>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신고를 하여야 한다.</u> ② (생략)</p>	<p>제11조(사용 폐지신고) ①<u>묘지사용자</u>.....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권의 취소) <u>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u> 1. <u>묘지사용의 허가일부터 1년이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하지 않을 때</u> 2.~ 3. (생략)</p>	<p>제12조(사용권의 취소) <u>묘지사용자</u>..... .....<u>사용</u> ..... (삭제) 2.~ 3. (현행과 같음)</p>
<p>제15조(과태료) <u>묘지의 불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삭제)</p>